

4.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- 제출일자 : 2021년 4월 2일
- 제출자 : 대구광역시장(감사관)
- 회부일자 : 2021년 4월 6일
- 상정일자 : 제28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
제2차 기획행정위원회(2021년 4월 16일), 원안 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감사관 하영숙)

□ 제안이유

- 공직자윤리법이 2021년 6월 23일 개정·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구성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상 공직자윤리위원회 의결 요건 등 일부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·보완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-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증원하고,

이중 민간위원을 현행 7명에서 9명으로 구성하여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취업 심사 등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하였고,

- 또한,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요건 중 ‘법관’을 판사·검사·변호사로 변경하고, 공직자윤리위원회 내부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2명의 당연직 공무원은 기획조정실장, 감사관으로 명시하였음.
- 위원회 회의시 중요사항의 의결요건을 현행 재적위원 2/3이상 찬성에서, 출석위원 2/3이상 찬성으로 변경하여,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으며,
- 공직자윤리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에 주식매각 또는 신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 규정함.

3.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신록휴)

○ 이 개정조례안은

- ▶ 상위법인 「공직자윤리법」이 개정(‘21. 6. 23. 시행)됨에 따라 그 시행에 맞춰 관련 조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○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,

- ▶ 안 제2조제1항에서는 대구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수를 현행 11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, 민간위원 자격을 ‘법관’에서 ‘판사·

검사 변호사로 변경하는 등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, 분야별 전문가의 참여 기회 확대와, '법관'의 모호한 사전적 의미를 해소하고, 다양한 인력구성(pool)을 가능케 할 것으로 기대됨.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위원 구성	11명 (민간 7, 시의회 2, 공무원 2)	13명 (민간 9, 시의회 2, 공무원 2)
민간 위원자 자 격	법관, 교육자-----	판사·검사·변호사, 교육자 ---
당 연 직	없음	기획조정실장, 감사관

- ▶ 안 제6조제2항에서는 단서 각호14)에 적용하는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2/3이상 찬성에서 출석위원 2/3이상 찬성으로 변경하여, 의사결정의 경직성을 완화해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도모하였음.
- ▶ 안 제6조의2는 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, 질병 등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,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등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직무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이는, 해임·해촉 규정이 없는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, 위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 시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임하거나, 해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안정적 운영과 함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운영상 장애

14) 안 제6조②항 단서 ~다만,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1. 조사의뢰 및 조사승인, 2.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, 3.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, 4. 대상자 고발

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임.

- ▶ 안 제10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맞춰 전년도의 재산등록,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, 선물신고,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, 그 밖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 제출을 시의회 2차 정례회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하였음.

이는 연차보고서 대상 목록 중 직무관련성으로 인한 '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'의 경우를 추가하였고, 또한 보고시기도 당초 2차 정례회에 제출하던 것을 2차 정례회 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변경함으로써 의회의 감시·감독 기능을 강화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임.

- ▶ 그 밖에 안 제1조, 안 제3조~제5조, 안 제7조, 안 제10조~제11조의 일부 조문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고,
- ▶ 안 부칙에서는 안 제2조제1항, 안 제10조의 개정규정을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여, 상위법인 「공직자윤리법」개정 시행일('21. 6. 23. 시행)에 맞춰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임.

○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

- ▶ 이번 개정안 제출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맞춰 우리 조례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, 관련 규정이 일부 미비한

사항들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함.

- ▶ 다만, 상위법 개정 등 변동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, 관련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우리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제도운영의 완결성을 기해야 할 것임.

-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

참 고

공직자 윤리위원회 현황

□ **운영개요**

○ 설치근거 : 「공직자윤리법」 제9조

공직자윤리법 제9조(공직자윤리위원회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·결정하기 위하여 국회·대법원·헌법재판소·중앙선거관리위원회·정부·지방자치단체 및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교육청에 각각 공직자윤리위원회를 둔다.

○ 조례 제정 : 「대구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정(1993. 8.10.)

※ 조례 제정 이후, 4차례 일부 개정 ('95.03.20. '07.01.08. '07.12.31. '12.03.30.)

< 조례 개정 사항 >

조례개정일	주요 개정내용
1995.03.20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법 조항 변경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제3조제1항2호 : 법 제8조 제1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→ 법 제8조 제12항 - 제6조제2항1호 : 법 제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승인 → 법 제8조 제7항 및 법 제8조 제12항
2007.01.08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위원회 위원 추천대상 확대(제2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민단체(비영리민간단체)에서 추천하는 자 추가
2007.12.31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위원회의 관할대상 조정(제3조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의회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- 구·군의회 의원, 구·군 4급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◦ 의회 등예의 보고(제10조)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시의회에 연차보고서 제출
2012.03.30.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위원회 구성 변경(제2조제1항~제2항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위원 수를 현행 9명에서 11명으로, 민간위원을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2명 증원 ◦ 위원회 분과위원회 설치 신설(제2조제4항) ◦ 위원회 심사기준 신설(제3조의2)

□ **구성현황**

○ 구 성 : 11명(내부 4, 외부 7) * 최초구성 : 1993. 9. 9.

○ 임 기 : 2년(위촉직 위원인 경우 1차례 연임 가능)

○ 기 능

-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
-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여부 확인, 취업승인 및 업무취급 승인 등 심사·결정
- 공직자윤리법 위반자에 대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등

<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 >

-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: 시장, 구청장·군수, 3급 이상 공무원, 시의원 등
-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 : 시 소속 4급 이하 공무원, 구·군 소속 4급 공무원, 구·군의원, 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
- 구·군공직자윤리위원회 : 구·군 5급 이하 공무원

□ 운영현황

○ 회의개최('18년 ~ '21년 3월)

연도별	계	대 면	서 면	비 고
계	20회	10회	10회	
2021년	2회	-	2회	
2020년	5회	2회	3회	
2019년	9회	5회	4회	
2018년	4회	3회	1회	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○ 없 음

5. 토론요지

○ 없 음

6. 수정안 요지

○ 없 음

7. 심사결과

○ 원안 가결(재석의원 전원찬성)

8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 음
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○ 없 음